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15.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406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9. 30. 한운수 의원 대표발의(10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2024. 10. 15.)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한운수)

가.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육성 및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를 창출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안 제5조 및 제6조)
-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7조)
- 청년 문화예술 재정지원(안 제8조)
-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업무의 위탁(안 제9조 및 제10조)
-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안 제11조)
- 표창(안 제12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입법예고 : 2024. 10.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 한윤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제정안은 청년 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재정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목적(안 제1조)는 조례 목적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이하 생략)” 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제정안의 제명과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시행계획(안 제5조), 청년 문화예술사업(안 제6조), 재정지원(안 제8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청년 문화예술”의 개념에 “청년 문화예술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볼 수 있음. 이에 조례 입법취지나 목적이 종합적·포괄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광의의 개념을 목적 규정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정의(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청년 문화예술인”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 청년 정책의 기본이 되는 조례와 청년의 기준을 동일한 부분은 적정하다고 사료 됨.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는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문화예술인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 문화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유사·중복되는 조례 간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여 다른 조례와의 상충을 피하고 조화를 도모

하기 위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구에서 추진하는 청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여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발전계획은 강남구 문화도시 구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해 보임.
- 청년 문화예술사업(안 제6조) 및 재정지원(안 제8조)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특화되고 전문적인 정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단체 현황,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유사·중복된 사업이 부서별 혼재되어 시행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설계와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 밖에 사업 및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방법 및 기준, 소요 예산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위원회 관련(안 제7조)는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서도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가 있으며, 강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한다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보임.
- 실태조사(안 제9조)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청년 문화예술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목

적 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3조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기본법」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은 청년 문화예술인이 처해있는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년 문화예술의 가치와 잠재성을 주목하여, 관계 법령상의 지자체의 사무 또는 책무를 구체화하고 청년 문화예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이에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청년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 현황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정책 마련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나아가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강남구 지역문화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를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 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406호

제안일자 : 2024.10.15.

제안자 : 복지문화위원장

### 1. 수정이유

- “청년 문화예술”의 개념에 “청년 문화예술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포괄적 개념으로 수정하고자 함
-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고려하여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 2. 수정주요내용

- 용어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
- 조문 내용 수정 및 정비(안 제5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청년 문화예술인”을 “청년 문화예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청년”을 “청년 문화예술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으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를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으로, “수립해야”를 “수립하여야”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u>청년 문화예술인</u>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청년 문화예술</u>----- ----- ----- ----- ----- -----.</p>
<p>제2조(<u>용어의 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5명 이상의 <u>청년</u>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p>	<p>제2조(<u>정의</u>)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청년 문화예술인</u>----- ----- ----- ----- ----- -----.</p>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u>청년 기본 조례</u>」 제5조의</p>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u>청년 기본 조례</u>」 제5조에</p>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③ (생략)

따른 -----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 수립하여야 ----.

②·③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이뤄지는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5명 이상의 청년 문화예술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및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4.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

5. 청년 문화예술 기반 시설 구축, 특화 지구 및 커뮤니티 조성 사업
6.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작,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7.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8.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거리 버스킹 인증 제도 및 버스킹존 운영 사업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창작 공간 및 버스킹존 등 문화공간 조성 지원
2.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창작·홍보 활동 지원
3.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4. 청년 문화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예술 교육 등 문화기획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교류 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 문화예술인 자립 기반 구축 지원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사업 및 제9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기업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